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3가단5157628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

담당변호사 김지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

담당변호사 조민정

변 론 종 결 2023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29,361,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 제1~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다. 원 · 피고와 위 회사는 2021. 1. 27. 위 회사가 보통주 1803주(이하 ‘이 사건 주식’)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,333,133원에 인수하는 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)을 체결하였다. 원고는 2021. 2. 9. 위 회사에 200,333,133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.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고가 보유한 위 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 회사 또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위 회사 또는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시점의 주식 총 인수금액에 연 7% 복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해당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(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).

나. 위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2023. 3. 31. 개최되었다. 원고는 2023. 4. 17.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3. 4. 19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2. 피고는 다음 ①~③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. 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실질적으로 투자금 반환 채무에 해당한다.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신주 인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전액 이상 회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. ②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이다.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권이 부여된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라는 점에서 더욱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.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우선주도 아닌 보통주를 가진 원고를 다른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마치 우선주를 가진 것처럼 원고가 신주 인수 대금 형식으로 지급하였던

투자금을 전액 이상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.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하여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원고에게만 부여하는 약정으로 무효이다. ③ 원고를 다른 주주들과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.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, 즉 ①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때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(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24986 판결), ②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이 위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위 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.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피고는 다음 ①~③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 ① 다음 ㉠, 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로 보아야 한다. ㉠ 원고가 이해관계인이라는 명칭 하에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. 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면 위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. ②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위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기초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. ③ 주채무로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았다.

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, 즉 ① 이 사건

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위 회사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,
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이 위 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
 등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위 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
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
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
 대한 채무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. 피고의 위
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,361,403원[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년 2월 9.일부터 2년
 동안만 연 7% 복리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, $(200,333,133\text{원} \times 1.07) \times 1.07$] 및 이에 대하여
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
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반정우